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선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6.

발 의 자 : 박선원 · 이수진 · 유동수
허성무 · 전용기 · 김승원
강준현 · 임호선 · 조정식
신정훈 · 부승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(활주로 · 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· 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)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, 지연 30분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.

그런데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 예정시간이 경과한 경우 및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 시에 즉시 안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아 지연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(下機)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1조의2제2항).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의2제2항 중 “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”를 “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(下機)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”로, “30분마다 그”를 “그”로, “한다”를 “하며,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30분마다 이를 알려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1조의2(이동지역에서의 자연 금지 등) ① (생략)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 태로 이동지역에서 <u>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</u> 해당 항공 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 게 <u>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.</u>	제61조의2(이동지역에서의 자연 금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이륙에 소요 되거나 착륙 후 하기(下機)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 과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</u> ----- ----- <u>그</u> ----- ----- <u>하며, 항공기를 머무 르게 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 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30분마 다 이를 알려야 한다.</u>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